

부속서 II

파나마의 유보목록

주해

1. 이 부속서의 파나마 유보목록은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파나마가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를 규정한다.

가. 제9.3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0.2조(내국민 대우)

나. 제9.4조(최혜국 대우) 또는 제10.3조(최혜국 대우)

다. 제10.5조(현지주재)

라. 제9.9조(이행요건)

마. 제9.10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또는

바. 제10.4조(시장접근)

2. 각 유보항목은 다음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9.13조(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된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라.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그리고

마. **기존의 조치**는, 투명성의 목적상,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는 기존의 조치를 적시한다.

3. 제9.13조제2항(비합치 조치) 및 제10.6조제2항(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 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유보항목의 해석에서, 그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될 것이다. 유보내용 요소는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5. 이 협정의 목적상, 파나마는 다음을 양해한다.

파나마 관할권 수역에서의 어업 및 관련 활동은 서비스로 간주되지 아니하여 제10장(국경 간 서비스무역)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부속서 I 및 II에 기재될 필요는 없다.

1. 분야	사회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파나마는 법 집행 및 교정 서비스, 그리고 다음의 서비스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립 또는 유지되는 사회 서비스인 경우에 한정하여 그 서비스의 제공에 대하여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소득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보장 또는 보험, 사회 복지, 공교육, 공공훈련, 보건 또는 보육.

2. 분야	원주민 집단 및 소수 민족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현지주재(제10.5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파나마는 외국인 투자자 및 그 투자, 또는 외국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소수집단 또는 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원주민 집단에 부여된 권리 또는 특혜를 부인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는 세로 콜로라도(Cerro Colorado) 또는 노베 부글레 지역(Ngobe Bugle Region) 및 그 밖의 지역 관할권 내에 있는 그 밖의 모든 장소에서 광산의 탐사 및 개발을 개시, 촉진, 승인하지 아니한다는 법령 제30호(2011.2.22)의 파나마 정부의 약속을 포함한다.

3. 분야	파나마 운하 관련 사안
하위분야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1. 파나마는 파나마 운하 및 외국인 투자자와 서비스 공급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반환지역의 관리, 행정, 운영, 유지, 보존, 현대화, 이용, 개발 또는 소유에 관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파나마 운하는 적절한 수로, 그리고 정박지, 부두 접안지 및 입구, 육지 및 해양, 호수 및 하천, 수문, 부수 댐, 부두 및 수해방지구조물을 포함한다. 3. 경제재정부 반환자산관리국(구 대양간 지역사업청)의 관리 하에 있는 반환지역은 1977년 「파나마 운하 조약」 및 그 부속서(토리호스-카터 조약)에 따라 파나마 공화국으로 반환된 토지, 건물 및 시설과 그 밖의 물품을 포함한다.

4.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현지주재(제10.5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이행요건(제9.9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파나마는 기존의 공기업 또는 기존의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다음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제한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서비스 제공</p> <p>나. 그러한 지분 또는 자산에 대한 소유권</p> <p>다. 그러한 지분 또는 물품 소유자의 기술적 역량, 재정적 역량 및 경험, 그리고</p> <p>라. 그 결과로 발생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통제</p> <p>2. 그 매각 또는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 파나마는 고위경영진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국적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p>

5. 분야	건설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국경 간 서비스무역</u> 파나마는 거주, 등록 또는 그 밖의 현지주재 요건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 또는 파나마 법 및 사적인 계약상 의무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재정보증을 요구할 권리를 유보한다.

6. 분야	어업 및 어업 관련 부수 서비스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파나마는 파나마 관할권 내 수역에서 어업 및 관련 활동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한 투자, 소유 또는 지배 그리고 운영에 대한 요건에 관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7.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최혜국 대우(제9.4조 및 제10.3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p> <p>1. 파나마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전에 서명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2. 파나마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된 중미 통합 체제의 모든 협정에 따라 중미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3. 파나마는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다음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 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p> <p>가. 항공</p> <p>나. 수산</p> <p>다. 해난구조를 포함한 해상 사안, 또는</p> <p>라. 철도 운송</p>

8. 분야	운송서비스
하위분야	도로 운송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0.4조) 내국민 대우(제9.3조 및 제10.2조) 현지주재(제10.5조) 이행요건(제9.9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9.10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u>투자 및 국경 간 서비스무역</u> 1. 파나마는 정기 여객운송, 비정기 여객운송, 운영자를 포함하는 상업용 화물차량 임대 서비스 및 버스터미널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 및 투자 제공을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2. 파나마 국경 내의 육로를 통한 카보타지는 국내 운송업체들을 위하여 유보된다.

9.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9.3조) 이행요건(제9.9조)
정부수준	중앙
유보내용	<p><u>투자</u></p> <p>파나마는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국내 규정에 따른 공공질서 유지에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다만, 파나마는 즉시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였고 그 조치가 다음과 같다는 서면통지를 제공하여야 한다.</p> <p>가. 적용 가능한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p> <p>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한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p> <p>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p> <p>라.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p> <p>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한다.</p>